

부산직할시남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2. 11. 9.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 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0월 29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2년 10월 30일
- 다. 상정 일자 :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2년 11월 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세무1과장 추찬식)

가. 제안 이유

0. 대도시의 인구집중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신·증설 공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율의 5배 중과로
0.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었음
0. 이를 시정코자 공업지역내에 한하여 세제상의 제한을 제거, 공장의 신·증설 및 유입 이전을 촉구하여 도시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0.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안의 신·증설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을 일반세율(3/1000)의 5배인 것을 3/1000으로 일반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88조1항)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요지 (전문위원 이무상)

도시계획법 제17조에는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 지역등으로 구분하여 대도시의 인구 집중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신·증설 공장에 대하여 일반 과세율의 5배 중과를 현행 실시해온바 공장의 지역 이전등으로 인한 자치구의 지역 자립 경제에 차질이 예상되어 지방세법, 제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금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1항에 의거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공업지역안에 공장의 유치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 조례는 적법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수용 위원	세무1과장 추찬식	'참고자료에 보면, 옹호2동 공업지역내에 새마을 공장 및 극동정유 매립지에 공장수가 14개로 되어 있는데 극동정유 매립지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 고, 새마을 공장내 공장수가 14개란 뜻인지'	'남구 관내 용도지역내 공업 지역이 6Km ² 이고 용호2동 공업지역에는 새마을 공장 위치에만 공장이 14개가 있고, 극동정유 매립지에는 공장이 없음.'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주민보 위원	세무1과장 추찬식	<p>'남구 관내 공업지역내 공장 수가 71개인데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일반과세로 해 줄 경우 구세 수입에 대한 결합 즉 감면 금액이 어느정도인지'</p> <p>'앞으로 현상태에서 우리구 관내 공장지역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소지는'</p>	<p>'92년의 경우 준공업지역내 공장의 재산세가 458만1,760원이고 본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은 일반 과세가 됨에 따라 위 금액의 1/5이 됨. 약 90만원이 구세입이 되고, 나머지 3백수십만원은 감면 혜택이 됨.'</p> <p>'용호지역 및 감만, 우암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여건이 많은데 앞으로 공장이 들어서면 우리 구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됨.'</p>

5. 토론 요지

“ 없음 ”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